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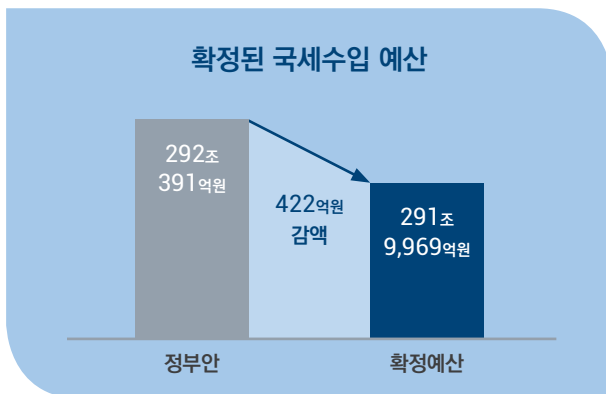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추계세제분석실 재산소비세분석과
소득법인세분석과

“ 국회는 2019년 12월 3일과 23일, 27일 세 차례 본회의를 거쳐 총 17개의 개정세법(국세 15개, 지방세 2개)을 의결함. 올해는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고 노후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하는 등 조세감면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이 이루어짐. 그 외에도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 등의 개정이 포함됨.

2020년 국세수입 예산은 291조원 9,969억원으로 확정됨. 이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92조 391억원 중 422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제주도·위기지역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신설 등에 기인함. ”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심사 쟁점을 살펴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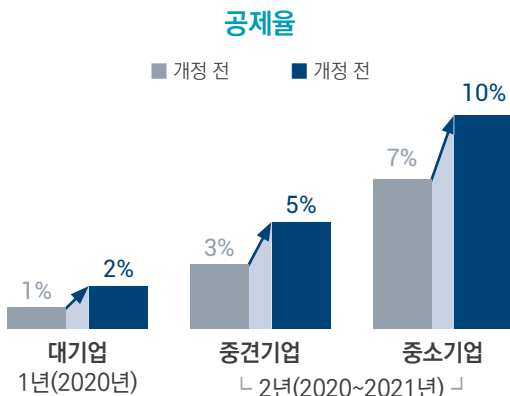
- 주요 개정항목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연장
 -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확대
 -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
 - 근로소득공제한도 신설

I. 2020년도 시행 주요 개정세법의 내용

1. 투자 및 소비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확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연장

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2년(대기업 1년) 연장



세수효과 연평균 1,932억원 감소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확대 및 연장

-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6개월 감면
-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3년 연장

1대당 최대 감면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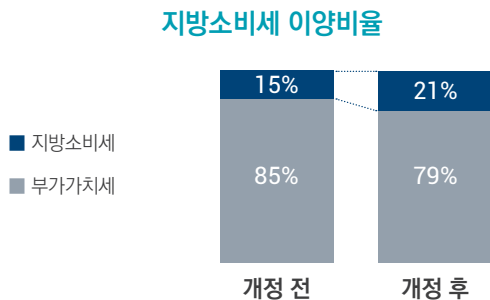
*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부가세(교육세·부가가치세) 감소를 포함

세수효과(노후차) 6개월 간 673억원 감소*

2. 과세체계 조정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6%p 인상 (15%→ 21%)



* 단, 국세 감소/지방세 증가

세수효과 연평균 55,895억원 감소

맥주·탁주에 대한 증가세를 종량세로 전환

맥주·탁주에 대한 증가세를 종량세로 전환, 생맥주에 대한 한시적 감면



출고가(수입신고가)의 72%
▶ 출고량(수입신고량) 기준 830.3원/ℓ
* 생맥주 2년 간 664.2원/ℓ 로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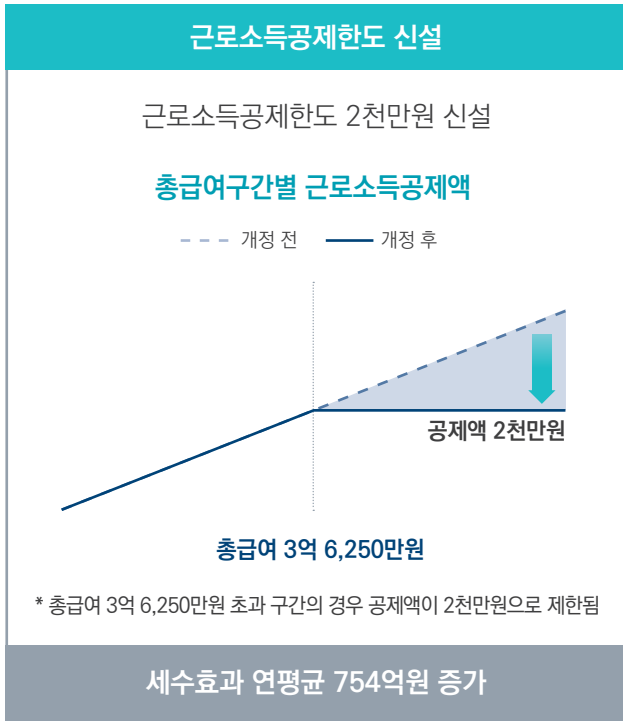


출고가(수입신고가)의 5%
▶ 출고량(수입신고량) 기준 41.7원/ℓ

* 종량세 하 세율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세수효과 연평균 14억원 증가

3. 과세형평 강화



4. 납세권의 보호 및 납세편의 증진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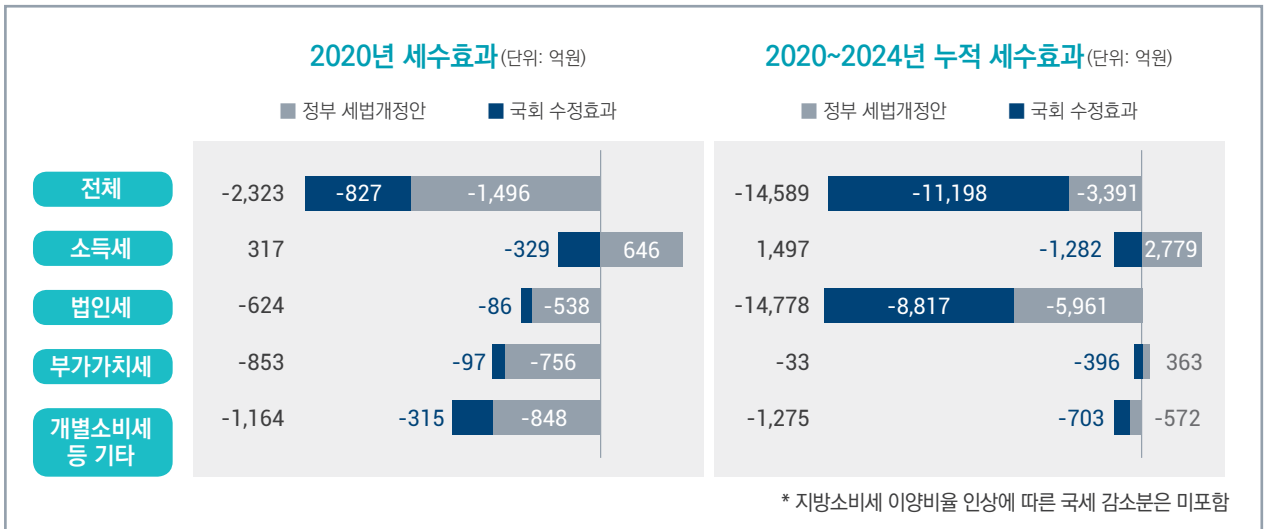
- 심사청구 관련 국세심사위원회를 자문기관에서 의결기관으로 조정
-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
- 영세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허용

II.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영향

1. 개정세법의 세수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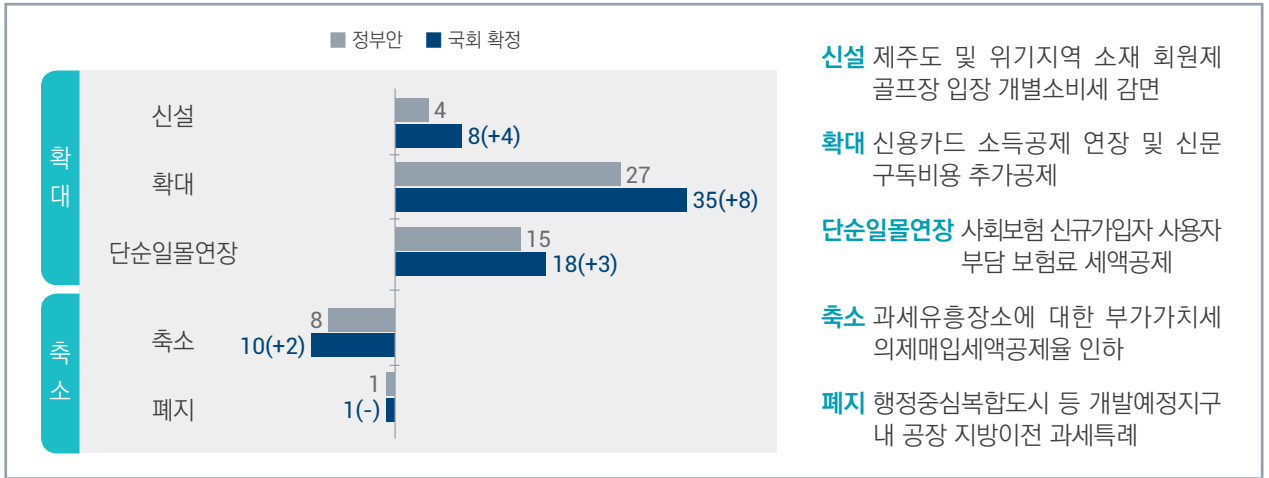
2020년 2,323억원, 2020~2024년 누적 1조 4,589억원의 국세 감소가 예상됨

- 투자 및 혁신성장 지원 등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2020~2024년, △1조 4,778억원)가 주된 요인



2. 조세지출 항목의 정비

조세지출은 72건 정비되었으며, 이 중 조세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항목은 61건,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항목은 11건임



III. 향후 논의 과제(주요 부대의견)

핵심 소재·부품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추가	특허비용 세액공제 신설
중요성이 높은 기술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기술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4차 산업혁명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사·분석·출원·등록·유지 등 업무를 R&D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

IV. 확정된 2020년도 총수입 예산 및 변동 내용

